# 도시정비사건 소송의 본안전항변사유와 본안쟁점사항에 관한 분석 - 인용률 및 행렬표식 분석기법을 활용한 -

김요한<sup>1</sup> · 정보선<sup>2</sup> · 이상엽\*

<sup>1</sup>법무법인 태한 · <sup>2</sup>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Analysis by Defensive Process Prerequisite and Offensive Cause of Action on the Merits of Lawsuit Cases in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Based on Affirm-Rate and Staircase Matrix Tables -

> Kim, Yohan<sup>1</sup>, Jung, Boseon<sup>2</sup>, Lee, Sangyoub\* <sup>1</sup>Law Firm Taehan Co., Ltd. <sup>2</sup>Department of Real Estate Studies, Konkuk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o analyze the winning determinants of the lawsuit cases on the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based on jurimetric methods. Based on affirm-rate and staircase matrix tables, 441 lawsuit judgments are analyzed. Research findings in affirm-rate analysis indicate that past legal relation, no own defect of accreditation, no ownership or association member status, lapse of period of litigation, and no legal interest are identified as higher rate in order for the reason for plea on the merit. And so are defect on calculation of consent rate, defect in relation with written consent, approval before zoning designation, defect in relation with general meeting, and defect on zoning designation for the issue on the merit. It is noteworthy from the staircase matrix table analysis that the criteria for affecting the lawsuit outcome is determined based on key forecasting variables such as past legal relation and no ownership or association member status.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the implication that the unnecessary disputes can be reduced in the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by the implementation of jurimetric quantitative analysis method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empirical law.

Keywords: Jurimetrics,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Lawsuit Case, Affirm-Rate, Matrix Table Analysis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데이터마 이닝과 학습을 통해 판단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인공지능의 활용가능성이 사회 전분야로 확대되며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이를 통한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다. 법학분야에서도 통계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실과 법리를 중심으로 소송 의 승·패소를 다투는 법률문제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통한 예측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부동산학계에서도 부동산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발견하고 계량적 분석을 활용하여 향후의 결과를 예측하는 학문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계량법학 (Jurimetrics)이 하나의 학문 분야로 형성되어 법원의 실제 판결을 계량적 및 인공지능적 방법 등을 활용하여 다각도로 분석하고 향후의 판결결과를 예측하고 변론전략을 수립하 는 것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계량

<sup>\*</sup> Corresponding author: Lee, Sangyoub, Department of Real Estate Studies, Konkuk University, Seoul 05029, Korea E-mail: sangyoub@konkuk.ac.kr Received August 5, 2019: revised accepted August 26, 2019

<sup>1)</sup> 대표적 논문들은 다음과 같음. Lee Loevinger, "Jurimetrics ; Science and Prediction in the Field of Law", Minnesota Law Review, 1962; R. Keown, "Mathematical Models for Legal Prediction", The John Marshall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 Privacy Law, 1980; Kris Steckman, "Market-Based Prediction Models as an Aid to Litigation Strategy and Settlement Negotiations", The Journal of Business, Entrepreneurship & the Law, 2009; Michael J. Saks, Samantha L. Neufeld, "Parallels in Law and Statistics: Decision Making under Uncertainty." Jurimetrics, 2012; 계량법학 에 관한 대표적인 초기 단행본 저작물로는 Hans Wolfgang Baade, 『Jurimetrics』, Basic Books, 1963이 있음(김요한, 2017 재인용).

법학의 입장에서 계량적 기법을 활용하여 법원의 실제 판결 에 대한 법률쟁송에 대한 연구결과가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등 서구에서 오래전부터 발전한 계 량법학의 개념과 연구방법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및 건설사업 관련 판결을 계량법학적으로 분석하여 법률쟁 송을 구성하는 변수의 특성에 따라 판결결과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부동산건 설과 관련된 대표적 소송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 해 추진되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중 실무에서 가장 법률분쟁 의 빈도가 높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주체인 조합설립과 관 련된 초기단계의 소송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 2) 이 를 위해 도시정비사업의 초기단계인 조합설립인가 쟁송에 대한 우리나라 전국의 제1심 행정법원 판결 441건을 분석대 상으로, 법률적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본 안전쟁점사항을 구분하여 각 내용과 요지를 살펴보고, 계량법학적으로 승소 확률표에 의한 빈도분석 및 계단식 예측방법에 의한 행렬표 식 분석을 통해 각 사유나 쟁점이 소각하판결 또는 본안승 소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관계자들에게 소송의 제기여부에 관한 결정이나 제기된 소 송의 변론 준비과정에서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소송결과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실무적 도움을 주고 사 회적으로 과다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의 빈도를 낮추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도시정비사업의 초기단계인 조합설 립과 관련된 실제 법원의 판결이다. 내용적 범위는 계량분석 과정에서 중복이나 오류를 피하기 위해 3심인 대법원 판결 과 2심인 고등법원 판결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제1심인 행정법원 판결과 지방법원(행정부)의 판결로 한정하였다. 시 간적 범위는 2009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의 약 6 년 동안 선고된 도시정비법과 관련된 실제 행정소송 판결이 다.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전국에 소재한 모든 행정법원 판결과 지방법원(행정부) 판결 441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실제 법원의 판결을 계량법학적으 로 분석한 해외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도시정비법 관련 실제 행정소송 판결의 내용을 분석하여 법률적 관점에 서 피고가 제출하는 본안전항변사유와 원고가 제출하는 본 안쟁점사항을 선정하였다. 이를 독립변수로 이용하여 계량 법학적으로 경험적 승소확률표에 의한 빈도분석 방법을 통

해 실제 소각하판결 또는 승소판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인용률을 분석하였다. 또한 계단식 예측방법에 의한 행렬표 식 분석을 통해 일부 본안전항변사유나 본안쟁점사항이 소 각하판결 또는 승소판결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 2.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 2.1 계량법학

계량법학이란 법학 연구에 계량방법을 적용하는 학문영 역으로 법학에 대한 전통적 과학의 영향 뿐 아니라 사회과 학, 공학, 기호논리학, 통계학, 생물학, 유전공학 등의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영향도 포괄하며, 법률실무, 입법, 재판 등 에 대한 첨단과학기술의 활용까지 망라하고 있다<sup>3)</sup>. 계량법 학 분야는 미국변호사협회의 발간물인 "Jurimetrics(계량법 학)"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며 미국을 중심으로 최근 급속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계량법학의 응용가능성은 빈도 분석부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모델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현재 미국 등 서구에서의 계량법학은 세계 적으로 유명한 법률검색서비스인 Westlaw 또는 LEXIS 등 과 같은 전자기술적 수단을 통한 정보의 확보를 포함하며, 생리학, 신경과학 등과 같은 첨단의학 분야 뿐 아니라 법률 적 판단의 결과에 관한 예측방법, 전문가 시스템까지 넓은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계량법학은 미국 하버드대학교4 및 예일대학교5 의 로스쿨에서 이미 정규과목으로 강의가 이루지고 있다. 이처럼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계량적 분석방법의 활용은 서구 법학계와 법조계에 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우리나라도 수십 년의 법조역사 에서 축적된 법률데이터를 계량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개 념법학, 해석법학의 틀에서 나아가 실증법학, 과학법학 연

- 3) '계량법학' 용어는 1949년 리 뢰이빙거(Lee Loevinger)에 의해 저술된 'Jurimetrics : The Next Step Forward'라는 논문에서 'Jurimetrics promises to cut windows in the house of law, so that those inside can see out, and to cut doors, so that those outside can get in' 즉 '계 량법학은 법률이라는 집 내부의 사람들이 밖을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제 거하고, 법률이라는 집 외부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제거하는 것을 약속한다.'고 처음으로 정의되어 사용됨.
- 4) 2016~2017학년도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의 "Introduction to Empirical Methods" 과목은 통계와 확률, 분산분석, 회귀분석, 통계적 추론 등 을 다루며, 실제 법률문제에서 계량적 분석방법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 지를 다루었고 "Analytical Methods for Lawyers" 과목에서도 회귀분 석 등의 기본적 분석방법, 법률문제에 대해 의뢰인의 다양한 선택의 상 황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도록 조언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 분석방 법, 법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적 분석방법 등을 포함하여 각종 법 률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계적 이슈를 다루고 있음.
- 5) 예일대학교 로스쿨에서도 2017년 봄 학기 "Reading Group: AI & Legal Implications" 과목에서는 법률문제에 대한 인공지능, 정보기술 적 접근 등을 다루고 있음.

<sup>2)</sup> 조합설립 관련 소송은 부동산공법 관련 소송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 로서 조합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원고가 되어 조합설립 을 인가해 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을 행정주체를 피고로 삼아 제 기하는 행정소송임. 정보기술적 접근 등을 다루고 있음.

구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 2.2 법률문제의 통계적 분석 관련 선행연구

법률문제에 대한 계량분석의 논제는 이미 미국 등의 서구 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 중에서 과거의 실제 사 건을 대상으로 계량적 방법을 통해 분석한 연구들을 중심으 로 검토하였다.

우선, 경험적 승소확률표에 기한 판결예측 방법은 과거 유사한 사건의 소범주별 승소율을 산정한 승소확률표를 바 탕으로 새로운 사건의 승소가능성을 예측하는, 빈도분석 과 유사한 초기 단계의 분석방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Negal (1966)은 미국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국제법과 관련하여 대 표적인 137건의 사건을 대상으로 계량적으로 판결예측을 연 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승소확률표는 법의 주요 근 거, 주요 주제와 미국의 지위 등의 7개 특성을 선정하여 이 를 변수로 이용하여 경험적 승소확률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7개의 특성 내에서 미국국내법, 국제법과 관습 등의 소범주 별로 과거의 실제 사건에 대한 승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137 건의 사건에서 미국정부는 65%의 승소확률을 기록하였다.

법원 소송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 로 계단식 예측방법은 적법절차와 평등권보호와 관련된 실 제 사건들을 분석대상으로 2개의 핵심예측변수를 이용하여 판결의 승소가능성을 분석하였다(Negal, 1985). 이는 2개의 핵심예측변수를 도출하고 변수별 위법성 정도가 강한 순서 대로 소범주를 선정하고 결과변수를 위치시킨 2차원 행렬표 를 통해 우상단일수록 원고의 승소가능성은 높아지도록 분 석하였다.

마지막으로 3개 이상의 변수가 존재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승·패소의 기여도 순서에 따라 각 핵심예측변수 내의 소범주에 0~100%의 백분율 값을 부여하는 백분율식 예측방법을 통해 Negal (1985)는 미국 1차 수정헌법 관련 실 제사건을 분석대상으로 판결의 승소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행렬표의 상단과 좌측에 각각 2개, 1개의 핵심 예측변수를 표시하여 2차원 행렬표를 만들고 변수 내의 소 범주에 0% 혹은 100% 값을 부여하여 각 행렬칸에서 합산하 는 방식으로 승소율을 예측하였다.

#### 2.3 본 연구의 차별성

우선 미국 등 외국의 계량법학 관련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분석대상의 표본 수. 사건의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외국 선행연구의 표본 수는 평균적으로 백여 건 내외였으 나, 본 연구의 표본 수는 441건으로 보다 풍부한 실제 판결 의 표본을 활용하여 데이터화함으로써 판결의 예측가능성 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해외 선행연구의 분석대상인 사건의 성격은 다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승패소의 판결을 내리는 사건이다. 반 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사건의 성격은 어느 한 가지 쟁점 의 사실관계라도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곧 바로 승패소의 판결을 내리는 성격의 도시정비사건을 분석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조합설립인가의 위법성을 다투는 사건의 경우, 예컨대 원고가 주장하는 5 가지의 위법사유(쟁점) 중에서 어느 한 가지의 위법사유(쟁 점)에 해당하면 행정주체가 행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위법 의 판단을 받으며 원고가 승소한다. 이러한 사건의 성격은 개별 주장사유 또는 소송상 쟁점이 소송의 승·패소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향후 판결예측을 연구하는 데 보다 적절한 분석대상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법학 관련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는 분석방법의 측면에서 실제 소송사건의 내용 을 개념법학이나 법규해석론의 틀에서 벗어나 계량법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 3. 본안전항변사유와 본안쟁점사항

각 본안전항변사유별, 본안쟁점사항별 인용률 분석, 계단 식 예측방식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 등을 통한 유의도 및 영 향력 분석을 위해 본안전항변사유와 본안쟁점사항이 무엇 인지, 실제 소송에서 대표적 요지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 3.1 본안전항변사유의 구체적 내용 및 판결요지

본안전항변이란 피고가 원고의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원고의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는 것이 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하는 본안전항변이 법리상 또는 사 실관계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의 본안 청구 에 관해 심리하지 않고 소각하판결로 소송을 종결한다. 따 라서 실무상 피고는 본안전항변을 제출하여 원고의 소를 각 하시키면 큰 성공이라 할 수 있다. 조합 입장에서는 정비 사 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하므로 본안전항변 사유는 실무상 매우 중요하다. 이에 도시정비사건의 판결을 분석함에 있어 본안심리의 전단계인 소송요건의 존재여부를 심리하는 본 안전항변에 대한 소각하판결 여부를 구분하여 판례를 분석 하면 다음과 같다.

1) '법률상이익 없음'항변이란 원고의 청구내용은 법률상 보호할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sup>6)</sup>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아니라, 별도로 총회에서 조합설립결의 내지 조합설립행위 부분을 분리하여 효력의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는 것임.

- 2) '처분부존재'항변이란 고가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 하는 소송대상물이 없거나 행정처분성을 갖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7)
- 3) '원·피고적격 없음'항변이란 원·피고에게 소송법상 당사 자적격이 없어 원고의 소제기는 부적법하다는 뜻이다 <sup>8)</sup>
- 4)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항변이란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원이 아니거나 정비구역 내 토지 에 관한 소유권이 없어 원고의 소제기가 부적합하다는 것이다.<sup>9)</sup>
- 5) '제명결의'항변이란 원고가 조합에 의해 제명되어 원고 의 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0)
- 6) '과거법률관계'항변이란 원고가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대상물이 변경되었거나 과거의 법률관 계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원고의 소제기가 부적법하 다는 것이다.11)
- 7) '후행처분존재'항변이란 원고가 효력을 다투는 소송대 상물로서 처분이 행해진 후 사업단계에서 새로운 처분 이 행해진 경우 선행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의 소제기는 부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 8) '인가고유하자 아님'항변이란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행정청의 인가처분에 의한 고유한 하자가 아닌 전제되 는 기본행위의 하자인 경우 행정청의 인가처분과 사인 의 기본행위는 엄격하게 구분되므로 기본행위의 하자 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3)</sup>
- 9) '수익적행정행위' 항변이란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
- 7) 조합설립인가처분 후 조합이 새로운 정관과 사업비 개산액을 산정하여 새로운 동의서 징구 등의 동의요건을 보완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을 신청하고 변경인가처분을 득하였다면 종전의 인가처분은 직권취소 나 철회되었으므로 부존재한다는 것임.
- 8) 행정청의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 후 피고적격이 행정청에 있으 므로 인가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 9) 원고가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던 중 조합설립인가처분 전 가족에게 양도하여 소유자가 아니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 해관계가 없다는 것임.
- 10) 원고가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던 중 조합설립인가처분 전 가족에게 양도하여 소유자가 아니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 해관계가 없다는 것임.
- 11) 최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행해지고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행해진 경우 최후의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내용의 인가 처분이라면, 최후의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최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 이 흡수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과거의 법률관계인 최초 인가처분의 효 력을 다투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임.
- 12) 사업시행인가처분이 행해진 경우 앞 단계인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한 하자를 항변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의 청구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데 가장 적절하 며 유효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임.
- 13) 이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조합창립총회에서 조합창립이 결의되 고 그 결의를 적법한 것으로 전제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는 무효결의

- 은 수익적 행정행위이므로 위법을 주장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4
- 10) '민사재판권'항변이란 원고가 행정쟁송 대상인지, 민 사쟁송 대상인지 혼동하여 잘못 소제기하여 부적법하 다는 것을 의미하다 15)
- 11) '제소기간도과'항변이란 항고소송 중에 취소소송의 제 소기간 도과 후의 소제기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16)
- 12) '중복제소'항변이란 원고가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 한 동일한 내용의 소제기는 부적법하다는 뜻이다. [77]
- 13) '소권남용/소송신탁'항변이란 원고의 소제기가 권리남 용에 해당하거나 소송신탁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부적 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8)
- 14) '기판력존재'항변이란 동일한 내용의 소송에서 과거 판결이 존재하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 법하다는 것이다. 19)

## 3.2 본안쟁점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요지

본안쟁점사항은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정 비법의 요건과 방식의 준수 여부에 관해 공방을 벌이는 것으 로 각 쟁점은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것 을 말한다. 각 본안쟁점사유의 인용률, 승소판결에 미치는 계

- 에 터잡은 인가처분이므로 취소청구가 행해진 경우 조합총회에서 결의 하자와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구별되므로 조합총회결의 하자를 조합설립인가 취소나 무효의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임.
- 14) 행정청이 조합에 대해 설립인가처분을 하였다면 조합 또는 원고에게 이 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이므로 그로 인해 원고에게 권리침해가 있다 고 할 수 없어 원고는 조합설립인가처분에 관해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다는 것임.
- 15) 총회결의나 조합설립 동의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를 이유로 항고소송으 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해야지, 조합을 피고 로 조합설립결의무효확인, 조합설립무효확인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 어 부적법하다는 것임.
- 16) 조합이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를 조합소식지에 기재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원에게 발송하고 원고도 수령하였으며, 그 외 조합은 조합인터넷 홈 페이지에 조합설립인가를 공지하고 행정청의 인가처분서를 계시하고, 마을 입구 등의 5곳에 인가 사실을 기재한 플래카드를 게시하였는바, 원 고는 소식지 수령일자부터 95일 지나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 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제기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는 것임.
- 17) 원고가 1년 전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 결을 받아 항소하고, 그 사건의 항소심이 계속 중임에도 원고는 다시 1 개월 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1심 법원에 소제기는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하다는 것임.
- 18)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설립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조합임원 선거 에서 낙선하자, 자신들이 주도했던 조합설립에 하자가 많아 무효를 주 장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의 소제기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신의칙 원칙 내지 금반언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하다는 것임.
- 19) 원고가 1년 전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 고, 다시 1개월 전에 종전 사건과 다른 무효사유를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제기는 종전 판결의 기판 력에 반하므로 부적법하다는 것임.

량적 유의도 및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구체적 내용을 판례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 1) '구역지정전승인'쟁점이란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행 정청이 추진위원회에 대해 구성승인을 해준 것이 위법하 다는 것을 뜻하다 20)
- 2) '추진위원 대의원 임원구성 하자'쟁점이란 추진위원회구성 단계에서 추진위원 선정 및 조합설립 단계에서 대의원이 나 이사 선정에서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다. 21
- 3) '구역지정하자'쟁점이란 정비계획수립 단계 및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법령이 정한 내용을 준수하지 못해 위법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 4) '노후불량요건 안전진단'쟁점이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 구역지정 단계에서 노후 · 불량 건축물의 비율판정에 있 어 철거불가피성 등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조사 등의 절차적 요건을 미비하여 위법하다 는 것이다.<sup>23)</sup>
- 5) '정관관련하자'쟁점이란 조합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 관의 제정 · 의결 · 내용 등과 관련하여 정관에 절차적 · 실체적 위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24)
- 6) '동의서관련하자'쟁점이란 추진위원회구성 또는 조합설립 에 요구되는 동의율 충족을 위해 동의서 징구에 있어 징 구절차에 위법이나 동의서 기재내용에 하자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sup>25)</sup>
- 7) '동의율산정하자'쟁점이란 추진위원회구성 또는 조합설립 에 요구되는 동의율 산정에 오류가 존재하고. 그 오류를 시정하여 재산정하는 경우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해 추진 위원회구성 또는 조합설립은 위법하다는 의미이다 26)
- 20) 사업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획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추진위 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청이 구성승인을 해준 것은 동의율 충족기준도 부존재 하며 정비사업에 관한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위법하다는 것임.
- 21) 조합의 임원이 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창 립총회에 감사나 이사로 선출된 자들은 주민등록상 사업구역 내의 거주기 간이 1년 미달하는 무자격자들인 점을 간과하여 조합설립인가를 한 행정 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임.
- 22) 행정청이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법령이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 에 관한 현장조사와 해당구역 주민들에 대한 공람, 공고절차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 등의 절차를 준수한 바 없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임.
- 23) 행정청이 안전진단은 고사하고 기초적 현장조사, 공람, 공고, 의견제출 기 회부여 등의 절차 없이 노후 · 불량 건축물로 판정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 하였는바, 행정청의 정비구역지정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임.
- 24)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할 당시 정관안과 달리, 다른 내용으로 정관안을 만들어 조합창립총회에 상정하고 총회의결을 얻 었다면, 변경된 정관안에 대해 법령이 정한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위법하고 이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처분도 위법하다는 것임.
- 25)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동의서 필수적 기재사항인 '신축건축물의 설계개 요'와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이 공란 상태의 동의서를 토지등소 유자로부터 징구한 후에 창립총회 무렵 추진위원회의 직원이 공란을 임의 로 보충기재하여 행정청에 제출하였으므로 공란 동의서는 의사표시에 하 자가 있는 동의서로 적법 · 유효한 동의서가 아니라는 것임.

- 8) '선행처분하자승계'쟁점이란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 에 승계되어 후행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7)
- 9) '총회관련하자'쟁점이란 조합설립에서 요구되는 창립총 회, 정기총회 등 관련 소집통지, 의결절차, 결의내용 등 에 위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8)
- 10) '시공사선정하자'쟁점이란 사업초기 단계에서 시공사선 정 과정이나 절차에 위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9
- 11) '대표자 조합장 자격하자'쟁점이란 추진위원장이나 조합 장 등의 자격에 하자가 존재하며, 부적격자가 대표자로 서 행한 조합설립동의서징구, 창립총회소집통지, 총회진 행. 조합설립인가신청.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등은 위법 하다는 것을 말한다. 30)
- 12) '사업내용변경'쟁점이란 조합설립을 위해 동의서를 징구 한 당초와 달리, 후에 변경된 사업내용을 조합원에게 알 리고 조합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위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1)
- 13) '신청시 첨부누락'쟁점이란 조합설립인가신청에 있어 필 수적으로 첨부하는 서류를 누락하여 위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다 <sup>32)</sup>
- 26) 추진위원회는 비주택단지와 주택단지를 구분하여 지역별 법정 동의율을 얻어야 하는바, 비주택단지의 경우 동의율이 70%에 불과함에도 행정청이 비주택단지와 주택단지를 구분하지 않고 정비구역 전체의 토지등소유자 의 동의율이 76%로 법정 동의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행한 조합설 립인가는 위법하다는 것임
- 27)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동의서교체, 사업비용개산액 누락, 기망 및 현 혹에 의한 동의서징구 등에 의해 동의율 불충족으로 무효이므로 조합이 새 롭게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채 일부내용만 변경하여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신청하고 그에 대해 행정청이 변경인가 하였다면 그 변경인가는 무 효의 하자를 승계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것임.
- 28)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아닌 일부만 창립총회개 최 안내문을 발송하고 나머지에게 통지하지 않고,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 유자 아닌 자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조합장 및 대의원 등 선거를 주관하고, 창립총회에서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반대하는 주민들의 출입을 막고 발언을 제지하며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조합설립에 동의한 총 회참석자들만 금품을 제공하였으므로 창립총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것임.
- 29) 조합설립 이전의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도시정비 법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특정 건설회사를 미리 시공사로 선정하고, 이에 관해 창립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를 통과시킴으로써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결국 조 합설립인가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임.
- 30) 임시총회 소집 당시에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 중인 조합장 A가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고, 그에 기한 조합설립 변경에 관한 결의가 통과되었으므로, 대표권 없는 자의 소집에 의해 개최된 총회의 결 의에 터잡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임.
- 31)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구역으로 조합설립을 인가했으나, 후에 정비구 역이 대폭 확대되고 정비사업의 내용도 크게 변경되며 조합원의 수와 사업 비도 크게 증가했으므로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에 관해 기존구역 토지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한 채 확대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만 동의 를 얻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득하여 위법하다는 것임.
- 32) 조합설립인가신청을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동의서, 정관, 정비사업 비 관련 자료 등의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것 은 법령 위반이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라 는 것임.

# 4. 분석결과

#### 4.1 본안전항변사유 분석

## 4.1.1 본안전항변사유의 인용률 분석

보 연구는 총 441건의 도시정비사건을 분석한 결과, 총 14가지의 본안전항변사유가 피고에 의해 소송에서 실제 제 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Table 1). 본안전항변사유에서 주 장 건수와 이에 따라 실제 제출된 본안전항변이 법원에 의 해 타당한 항변으로 인정되어 소각하판결에 직접원인이 된 인용건수를 기재하였다. 피고에 의해 제출되는 특정 본안전 항변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지의 문제는 구체적 사건의 내 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야 한다. 33) 이러한 주장건수 대 비 인용건수의 비율(%)인 인용률을 분석한 결과. '법률상이 익 없음' 항변은 441건의 도시정비사건 중 10건에서 제출되 었는데, 그 중 4건에서 해당 항변은 소각하판결의 직접 원 인으로 기여하였으므로 '법률상이익 없음' 항변을 제출한 경 우의 성공률 또는 인용률<sup>34)</sup>은 40%가 되며, '처분부존재' 항 변은 441건의 도시정비사건 중 4건에서 제출되었으나, 해당 항변은 모두 소각하판결에 직접 원인으로 기여하여 결국. '처분부존재' 항변이 제출된 경우의 성공률은 100%가 된다. 이와 유사하게 나머지 항변들도 성공률 또는 인용률을 파악 할 수 있다.

Table 1. Affirm-rate by defensive process prerequisite on the merits – N(%)

Issue (N=441)	Claim No.	Affirm. No.	Ratio(%)
no legal interest	10(5.4)	4(4.3)	40.0
non-existence of disposition	4(2.2)	4(4.3)	100.0
no standing to sue and be sued	5(2.7)	3(3.3)	60.0
no ownership or association member status	26(14.1)	14(15.2)	53.8
expulsion resolution	1(0.5)	0(0.0)	0.0
past legal relation	62(33.7)	42(45.7)	67.7
existence of trailing disposition	4(2.2)	1(1.1)	25.0
no own defect of accreditation	30(16.3)	6(6.5)	20.0
beneficial administrative act	2(1.1)	0(0.0)	0.0
civil jurisdiction	3(1.6)	3(3.3)	100.0
lapse of period of litigation	20(10.9)	6(6.5)	30.0
double lawsuit	4(2.2)	3(3.3)	75.0
right of lawsuit abuse, litigation trust	7(3.8)	3(3.3)	42.9
existence of claim-preclusion	6(3.3)	3(3.3)	50.0
Sum	184(100)	92(100)	50.0

#### 4.1.2 계단식 예측방식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

계단식 예측방식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은 직관적으로 쟁

점과 승·패소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판결예측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변수들은 행렬표에서 일정한 방향일수록 승소가능성(또는 패소가능성), 위법성 인정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위계적 특성이 나타나야 한다. 이처럼 소송의 승·패소와 관련하여 위법성 고저의 위계적 특성이 각 변수들 간에 또는 특정 중요변수 내의 소범주들 간에 존재하는 경우 중요변수를 핵심예측변수라고 명명하였다(Negal, 1985).

계단식 예측방법은 8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특정 분야에서 한 가지 이상의 핵심사건을 선정하고, 2단계는 핵심사건의 승소 또는 패소에 관련 있는 변수나 특성을 선정한다. 3단계는 각 변수나 특성 내에서 다시 소범주를 선정하고, 4 단계는 원고와 피고에 유리한 정도에 따라 소범주들의 순서를 정렬한다. 5단계는 행렬표의 상단과 좌측에 각각 한 가지의 변수를 위치시켜 2차원 행렬표를 만들고, 6단계는 행렬표의 각 행렬칸에 위치한 해당 소범주의 조합에 따른 예측결과를 기입한다. 7단계는 원고 또는 피고의 승소가능성을 나타내는 계단을 행렬표에 표시하고, 8단계는 새로운 사건을 선정하고, 새로운 사건에 부합하도록 행렬표를 수정한다.

본 연구는 본안전항변사유와 본안쟁점사항의 각 변수 또는 소범주를 대상으로 행렬표식 분석을 통해 계단식 예측방법이 적용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안전항변사유의 핵심예측변수는 인용건수 빈도가 가장 높은 '과거법률관계' 항변사유 변수,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항변사유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각 항변사유 내의 소범주들은 실제 소송에서세부 쟁점으로 다투었던 항목들을 선정하였다. 각 소범주는 본안전소각하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각 소범주는 피고측에 의해 항변으로서 제출되었으며, 법원에 의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소범주는 본안전소각하 판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실제사건에서 피고는 '과거법률관계' 항변사유 변수,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항변사유 변수를 모두 주장한 경우도 있으나, 어느 한 가지만 주장한 경우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핵심예측변수들을 모두 주장한 경우와 한 가지만 주장한 경우를 구분하여 행렬표를 작성하였다. 1개의 핵심예측변수만 주장하여 성공한 경우는 중간 굵은 선보다 상단행이나우측열에 배치하였다. 중첩적으로 2개의 핵심예측변수를 모두 주장한 경우는 중간 굵은 선보다 하단행이나 좌측열에 표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각 핵심예측변수 내의 소범주들을 모두 주장한 것은 아니며, 그 중 일부만 주장한 경우도 있다. <sup>41)</sup>

<sup>33)</sup> 피고에 의해 제출되는 특정 본안전항변의 내용은 법리적으로 타당해야 하며,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의해 증명되기 때문에 동일한 특정 본안전항변이더 라도 어느 사건에서는 인용될 수 있고, 다른 사건에서는 인용되지 않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많음.

<sup>34)</sup> 성공률 또는 인용률은 해당 항변의 단독 제출로 인한 성공 여부를 파악한 것이므로 다수 항변들을 동시에 제출한 경우 승소율과 다를 수 있음.

<sup>41)</sup> 예를 들어, 서울46814 사건은 '과거법률관계' 항변 내의 '조합설립인가후변경 인가' 소범주가 항변으로 제출됨과 동시에 '조합원지위또는소유권없음' 항변 내의 '중도에사업지에서제척' 소범주가 항변으로 제출되었는데, 2개의 소범 주 또는 1개의 소범주가 소각하판결에 직접 원인으로 기여하였음

			No ownership	or association	member status			
		with plea on	no plea on no ownership or association member status	sum				
			expropriation, compensation	exclusion at the project site in midway	forfeit of ownership in midway (cash liquidator)	no ownership (no owner within project zone)		
	no plea on past legal relation			Case No.35)	Case No. <sup>36)</sup>	Case No.37)		9
Past legal relation		alteration accreditation after establishment accreditation of association		Seoul46814	Seoul8317	Seoul863	Case No. <sup>38)</sup>	21
	with plea on past legal	transition to association from promoting committee			Seoul17585	Seoul14053	Case No. <sup>39)</sup>	17
	relation	alteration approval after approval of promoting committee					Case No. <sup>40)</sup>	5
		alteration accreditation after alteration accreditation						
			I	۸ .	_	0	00	1

Table 2. Matrix table of past legal relation, association member status or no ownership (Based on 441 cases)

이에 본 연구는 소범주들 중 어느 것이 승소판결에 직접 영 향을 미치는지를 구분하여 행렬표에 기재하였다. '과거법률 관계' 항변사유 변수 내 소범주들은 하단에서 상단일수록.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항변사유 변수 내의 소범주들 은 좌측에서 우측일수록 소각하판결의 강도 및 본안전항변 의 인용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배치하였다. 가장 하단행과 우측열에는 해당 소범주가 직접 소각하판결의 승소 및 피고 항변의 인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친 승소건수를 기재하였다.

각 행렬 칸에는 해당 핵심예측변수의 각 소범주가 직접 소각하판결에 원인으로 기여한 사건번호의 법원명과 끝자 리를 기재하였다. 결국 〈Table 2〉의 행렬표에 기재된 사건 은 해당 핵심예측변수나 소범주의 주장으로 인해 소각하된 것만 나타낸 것이다. 즉, 피고의 본안전항변이 성공한 사건 만을 표시한 것이다.

'과거법률관계'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에 대한 계 단식 예측방식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결과, 각 소범주들은 우 상향일수록 소각하판결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빈도가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우상향에 위치한 각 소범주들은 실제 사건에 있어 소송요건 흠결의 정도가 더 높은 것을 드러낸다. 과거법률관계 변수 중 가장 강한 영향력이 있는 소범주는 21 회의 소각하판결에 영향을 미친 '조합설립인가후변경인가' 소 범주이다.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변수 중 가장 강한 영향력이 있는 소범주는 6회의 소각하판결에 영향을 미친 '소

- 35) 서울19499, 수원369
- 36) 서울12700, 청주2387, 서울62579
- 37) 서울4975, 청주1193, 부산1812, 서울184
- 38) 서울52387, 서울53823, 서울43741, 서울44515, 서울46146, 서울48142, 서울 17339, 서울344, 서울22634, 서울20178, 수원13345, 대전2759, 대전3820, 대 전3837, 서울917, 서울15988, 서울31007, 서울38097
- 39) 창원4016, 창원1905, 서울20423, 인천4597, 부산4214, 서울2210, 서울29383, 서울3548, 서울11423, 수원9103, 의정1707, 인천195, 인천744, 창원1339, 창
- 40) 서울10655, 인천232, 서울52370, 광주249, 서울1071

유권 없음(사업구역 내 소유자 아님)' 소범주라고 할 수 있다.

중간 굵은 선의 좌하방에 위치하는 가장 굵은 선은 승패 소구분계단 또는 승패소분계선으로 명명할 수 있다. 가장 굵은 선보다 좌하방의 변수나 소범주가 주장되더라도 이로 인해 소각하된 사건이 없기 때문이다. 즉, 441건의 사건 중 가장 굵은 선의 좌하방 변수나 소범주는 소각하판결에 영향 을 미친 사건이 없다. 따라서 실제 소송에서 가장 굵은 선의 좌하방 변수나 소범주는 향후 소각하판결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4.2 본안쟁점사항 분석

본 연구는 총 441건의 도시정비사건을 분석한 결과, 본안 에 관해 총 27가지의 세부 쟁점사항이 원고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본 연구는 세부쟁점을 범주화하 여 13가지의 쟁점으로 재분류하였다〈Table 3〉. 42) 본안쟁점 사항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동의율하자 산정, 동의서관련하자, 구역지정전승인, 총회관련하자, 구 역지정하자 등의 순서이다. 43)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441건의 판결 중 소각하판결이 행 해진 81건은 청구가 2건 이상인 사건이 일부 존재하였다. 그 중 5건의 사건은 일부 청구에 대해 소각하판결이 행해졌으 나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본안승소판결이 행해졌다. 44) 따라

<sup>42) 2</sup>가지 이상의 세부쟁점을 범주화한 쟁점은 2가지 이상의 세부쟁점이 모두 주 장된 경우에만 쟁점의 주장빈도를 1로 산정하였으므로 각 세부쟁점의 주장빈 도 합계와 쟁점의 주장빈도는 다를 수 있음.

<sup>43)</sup> 특정 쟁점이 원고에 의해 주장되더라도 실제 소송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의 문제는 구체적 사건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동일한 쟁점이더라도 어느 사건에서는 인용되어 원고승소판결이 행해질수 있고, 다 른 사건에서는 인용되지 않아 원고패소판결이 행해지는 경우도 많음,

<sup>44)</sup> 소송요건의 존부나 소각하 여부에 관한 판단은 각 청구별로 행해지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에서 청구가 2건 이상인 경우 1건 청구에 대해 소송요건이 흠결 되어 소각하되었더라도 다른 청구에 대해 소송요건이 충족되면 본안심리가 진행됨

Table 3. Claim frequency by offensive cause of action on the merits - N (%)

Issue	freq.	Detailed issue	freq.
approval before zoning designation	202 (17.7)	approval of promoting committee before designate maintenance zone	202 (15.2)
defeat an assumption of assumittee and delegate	02 (0.0)	defect on composition of promoting committee and director	17 (1.3)
defect on composition of committee and delegate	23 (2.0)	defect on composition of executives and delegate	6 (0.5)
defect on zoning designation	74 (6.5)	defect on establishment of maintenance plan, designation of maintenance zoning	74 (5.6)
deteriorated requirement safety Inspection	35 (3.1)	inadequateness of deteriorated requirement / inadequateness of safety Inspection	35 (2.6)
		defect such as absent of articles of incorporation	9 (0.7)
approval before zoning designation  defect on composition of committee and delegate  defect on composition of committee and delegate  defect on zoning designation  defect on establishment of maintenance plan, designation  defect on establishment of maintenance plan, designation  defect on relation with articles of incorporation  35 (3.1)  defect on procedure for resolution such as inadequate incorporation  illegality of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forgery and alteration of written consent before zoning  blank of written consent entry, essentials omissic attachment omission of written consent service as articles of consent rate value as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deception, daze, mistake on demand written consent service as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deception, daze, mistake on demand written consent rate such as citizen, foreign housing complex, withdrawal of consent rate such as citizen, foreign housing complex, withdrawal of consent rate such as citizen, foreign housing complex, withdrawal of consent rate such as citizen, foreign housing complex, withdrawal of consent rate such as citizen, foreign housing complex, withdrawal of consent rate such as citizen, foreign housing complex, withdrawal of consent rate such as citizen, foreign housing complex, withdrawal of consent rate such as citizen, foreign housing complex, withdrawal of consent rate such as citizen, foreign housing complex, withdrawal of consent rate such as citizen, foreign housing complex, withdrawal of consent rate such as citizen, foreign housing complex, withdrawal of consent rate such as citizen, foreign housing complex, withdrawal of consent rate such as citizen, foreign housing complex, withdrawal of consent rate such as citizen, foreign housing complex, withdrawal of consent rate such as citizen, foreign housing complex, withdrawal of consent rate such as ci	defect on procedure for resolution such as inadequate consent rate of articles of incorporation	22 (1.7)	
		illegality of articles of incorporation content	8 (0.6)
		forgery and alteration of written consent	47 (3.5)
defect in relation with articles of incorporation  defect in relation with written consent  defect on calculation of consent rate preceding disposition defect succession  defect in relation with general meeting  defect on selection of contractor defect on qualification of representative and	282 (24.7)	request of written consent before zoning designation	56 (4.2)
defect in relation with written consent		blank of written consent entry, essentials omission, abstractive entry	219 (16.5)
		attachment omission of written consent such as articles of incorporation, committee list	
		deception, daze, mistake on demand written consent	26 (2.0)
defect on calculation of consent rate	296 (25.9)	defect on calculation of consent rate such as citizen, foreigner, government owned land, housing complex, withdrawal of consent	296 (22.3)
preceding disposition defect succession	28 (2.4)	succession to trailing disposition from defect of preceding disposition	28 (2.1)
	83 (7.3)	absent of general meeting resolution such as zone alteration, contents change	18 (1.4)
preceding disposition defect succession		defect on convocation notice of general meeting	28 (2.1)
		defect on resolution procedure of general meeting, spot attendance requirement	48 (3.6)
defect on selection of contractor	8 (0.7)	defect on selection process of contractor	8 (0.6)
	13 (1.1)	representative ineligible such as chairperson, association president	13 (1.0)
change contents of project	30 (2.6)	alteration of project contents on request of written consent and general meeting resolution	30 (2.3)
attachment omission on apply	11 (1.0)	omission of attached document on apply accreditation of association establishment	11 (0.8)
	24 (2.1)	accreditation application of unauthorized person	8(0.6)
		contents of anti-public interest and anti-fairness	3(0.2)
other issues		existence of double association	
		application for dispersion of association	
		lapse of accreditation apply period, lapse of registration application period	6(0.5)
sum	1,120 (100)		1,326 (100)

서 보다 정확한 본안쟁점사항의 인용률을 산정하기 위해서 는 441건이 아니라 소각하된 판결 81건을 제외한 360건을 대상으로 하되, 청구가 2건 이상인 경우 일부 청구에 대해 소각하판결이 행해졌더라도 본안승소판결이 행해진 5건을 분석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 4.2.1 본안쟁점사항의 인용률 분석

이에 본안심리에 나아간 365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본 안쟁점사항의 인용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Table 4〉는 총 365건을 분석대상으로 재범주화한 13가지의 본안쟁점사항 에 관한 인용률이다. 두 번째 열은 본안쟁점사항이 주장된 건수를 기재하였다. 세 번째 열은 실제 사건에서 주장된 본 안쟁점사항이 법원에 의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본안승 소판결에 직접 원인이 되는 사건건수를 기재한 것이다. 마 지막 열은 주장건수 대비 인용건수 비율을 나타낸다.

본안쟁점사항에 대한 인용률 분석결과, '구역지정전승인' 쟁점은 본안심리로 진행된 365건 중 171건에서 주장되었는 데, 그 중 15건에서 해당 주장이 원고의 본안승소판결에 직 접 원인으로 기여하였다. '구역지정전승인'쟁점사항을 주장 한 경우 성공률 또는 인용률은 8.8%로 나타났다. 45) '추진위

Table 4. Affirm-rate by offensive cause of action on the merits - N (%)

Issue (N=365)	Claim No.	Affirm. No.	Ratio(%)
approval before zoning designation	171 (18.3)	15(16.0)	8.8
defect on composition of promoting committee member, delegate and executive	20(2.1)	0(0)	0
defect on zoning designation	63(6.7)	5(5.3)	7.9
deteriorated requirement	30(3.2)	1(1.1)	3.3
defect in relation with articles of incorporation	31 (3.3)	3(3.2)	9.7
defect in relation with written consent	235(25.1)	22(23.4)	9.4
defect on calculation of consent rate	245(26.2)	37(39.4)	15.1
preceding disposition defect succession	19(2.0)	2(2.1)	10.5
defect in relation with general meeting	69(7.4)	3(3.2)	4.3
defect on selection of contractor	8(0.9)	0(0)	0
defect on qualification of representative and association president	10(1.1)	0(0)	0
change contents of project	26(2.8)	5(5.3)	19.2
attachment omission on apply	9(1.0)	1(1.1)	11.1
SUM	936(100)	94(100)	10.0

<sup>45)</sup> 성공률 또는 인용률은 해당 쟁점의 한 가지 주장으로 인한 성공 또는 인용 여 부를 파악한 것이므로 다수의 쟁점을 동시에 주장한 경우 본안승소율과 다를 수 있음.

원 대의원 임원구성 하자 쟁점은 본안심리로 나아간 365건 의 사건 중 20건에서 주장되었는데, 그 중 어느 1건에서도 해당 쟁점사항은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추진위원 대의원 임원구성 하자'쟁점사항을 주장한 경우 성공률 또는 인용률 은 0%로 볼 수 있다. 나머지 쟁정사항들도 유사하게 파악할 수 있다.

## 4.2.2 계단식 예측방식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

본안쟁점사항 내의 소범주들은 다수 존재하며, 소범주들 간의 위계적 특성을 가진 핵심예측변수는 '동의율산정하자' 쟁점사항 변수와 '동의서관련하자'쟁점사항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쟁점사항 내의 각 소범주들은 위법성의 강도나 정도 및 승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 것 으로 가정하였다. 각 소범주의 쟁점들은 원고측에 의해 주 장되며, 법원에 의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범주가 본 안승소판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에 실제 판결의 결과를 참고하여 '동의율산정하자'쟁점 사항 변수 내 소범주를 승소가능성의 정도가 높거나 위법하 다고 인정되는 비율이 높은 순서로 나열하면, 사업구역변경 확대. 무허가건축물, 토지 또는 건물만 소유, 수인공유, 소 유자 아님, 주택단지, 사망자, 동의철회, 1인 다수소유, 소 재불명자, 국공유지, 구분소유권, 외국인재외국민의 순으로 구분된다. 이어서 '동의서관련하자' 쟁점사항 역시 실제 판결 의 결과를 참고하여 변수 내 소범주의 순위를 나열하면 설 계와비용 등 필수기재 공란, 인감서명날인상이, 위원명단상 이, 정관 등 주요내용상이, 위원명단 누락, 위조변조 의사진 정성결여, 인감미첨부, 정관미첨부, 기망현혹의 순으로 구 분된다. 각각 쟁점사항 내의 소범주들은 역순으로 승소가능 성의 정도가 낮거나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비율이 낮은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사건에서 '동의율산정하자'와 '동의 서관련하자'의 핵심예측변수가 모두 주장된 경우도 있으나, 어느 한 가지의 핵심예측변수만 주장된 경우도 많다.

이에 본 연구는 핵심예측변수 2가지가 주장된 경우와 한 가지만 주장된 경우를 구분하여 행렬표에 기재하였다 ⟨Table 5⟩. 한 가지의 핵심예측변수가 주장된 사건은 중간 굵은 선보다 상단이나 우측에 표시하였다. 핵심예측변수가 모두 주장된 사건은 중간 굵은 선보다 하단이나 좌측에 표 시하였다. 즉, 중간 굵은 선의 하단이나 좌측에 위치한 행렬 칸에 기재된 사건은 해당 행렬칸의 각 소범주가 중첩적으로 주장된 사건을 표시한 것이다. <sup>46)</sup> 또한 각 핵심예측변수 내의 소범주들은 모두 주장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주장되었다.

이에 주장된 각 소범주 중 어느 것이 승소판결에 직접 영향 을 미쳤는지를 구분하여 '동의율산정하자' 변수 내의 소범 주는 하단에서 상단일수록, '동의서관련하자' 변수 내의 소 범주는 좌측에서 우측일수록 승소의 강도 및 위법의 정도가 더 높은 것을 배치하였다

각 행렬 칸에는 해당 핵심예측변수의 각 소범주가 직접 승소판결에 원인으로 기여하여 승소한 사건번호의 법원명 과 끝자리를 기재하였다. 결국 〈Table 5〉의 행렬표는 해당 핵심예측변수나 소범주의 주장으로 인해 승소한 사건만 나 타낸 것이다. 최하단의 행과 최우측의 열은 해당 소범주가 승소판결에 직접 영향을 미친 승소건수를 표기하였으며, 괄 호 안은 중복된 경우를 제외한 승소건수를 기재하였다.

'동의율산정하자'와 '동의서관련하자'에 대한 계단식 예측 방식에 의한 행렬표식의 분석결과, 우상방일수록 각 소범주 는 승소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나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상방에 위치한 소범주일수록 실제 사건에 서 위법의 정도가 더 높은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동의율산 정하자' 쟁점사항 변수 중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소범 주는 중복건수를 제외하고 8회의 본안승소판결에 영향을 미 친 '사업구역변경확대' 소범주이다. '동의서관련하자' 중 가 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소범주는 중복건수를 제외하고 22 회의 본안승소판결에 영향을 미친 '설계와 비용등 필수기재 공란' 소범주이다.

가장 굵은 선은 중간 굵은 선의 좌하방에 위치하는데, 일 종의 승패소구분계단 또는 승패소분계선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가장 굵은 선보다 좌하방의 변수나 소범주로 인해 본 안 승소한 사건은 365건 중 1건으로 의정부3496로 유일하 기 때문이다. 한편, 가장 굵은 선보다 우상방에 있으며, 중 간 굵은 선보다 좌하방에 있는 7개의 행렬칸은 빈 칸으로 되 어 있다. 이 빈 칸은 가장 굵은 선이 승패소의 구분기준으로 서 기능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7개의 빈 칸에 해당하는 2개의 소범주가 동시에 주장된 사건이 없거 나 주장되었더라도 어느 1개의 소범주가 승소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7개의 빈 칸에 해당하는 2개의 소범주가 동시에 주장된 사건에서 1개의 소 범주이더라도 승소에 직접 원인으로 기능하여 본안승소판 결에 이를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가장 굵 은 선은 승패소분계선으로서 완벽하게 기능한다고 단언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가장 굵은 선 좌하방의 변수나 소범주는 본안승소판결에 직접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향후에도 매우 낮다고 예측할 수 있다.

<sup>46)</sup> 예를 들어 대전3110 사건은 '동의율산정하자' 변수 내 '사업구역변경확대' 소 범주가 주장됨과 동시에 '동의서관련하자' 변수 내에서 '위원명단상이', '인감 서명날인상이' 소범주가 주장되어, 위 사건은 소범주 3개가 동시에 주장되어 각 소범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승소에 직접 원인으로 기여하였음.

Table 5. Matrix table of defect on calculation of consent-rate and defect in relation with written consent (Based on 365 cases)

	Defect in relation with written consent												
				with claim in defect in relation with written consent							no claim in defect in relation with written consent	sum	
			deception, daze	no- attachment of articles of incorporation	no- attachment of seal	lack of authenticity of forgery and alteration	omission of committee list	differences in main content such as articles of incorporation	difference in list of committee member	difference in seal signature sign	blank of essential entry such as design and cost		
	no claim against defect on calculation of consent rate					Cheongju 1193		Seou 49933	Seoul 49933	Seoul 46814	Case No. <sup>47)</sup>		18 (17)
	with claim in defect on calculation of consent rate	alteration and enlargement of project zone					Seoul 39735	Seoul 5882	Daejeon 3110	Daejeon 3110		Case No. <sup>48)</sup>	9 (8)
		no-permission building								Seoul 25404, Seoul 33603	Case No <sup>49)</sup> .	Seoul 47316, Seoul 15169	8 (6)
Defect on calculation		own of only land or building			Uijeongbu 3496						Seoul42946, Busan 3263	Case No. <sup>50)</sup>	6
of consent rate		several co-ownership							Daejeon 3110	Daejeon 3110	Busan 97	Case No. <sup>51)</sup>	6 (5)
		not owner								Seoul 25404 Seoul 33603	Seoul 25404 Seoul 33603		4 (2)
		housing complex										Case No. <sup>52)</sup>	3
		deaths										Case No.53)	3
		consent withdrawal									Busan 97	Busan 462 Seoul 15169	3
		1 person multiple ownership										Seoul 47316 Seoul 9192	2
		unknown whereabouts									Seoul 56044	Seoul 47316	2
		government owned land										Seoul 47466 Seoul 47316	2
		partitioned—ownership recognition right										Seoul 9192	1
		foreigner, overseas Koreans											
		group corporate church											
		sum			1	1	1	2	3(2)	7(4)	25(22)	27(16)	

# 5. 결론

본 연구는 미국 등 서구에서 이미 널리 연구되고 있는 계량 법학적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도시정비사건 판결의 승·패소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도시정비사 건 중 사업초기 단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조합설립 관련 소송의 전국 제1심 행정법원의 판결 441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제 소송의 변론에 부합하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원고 측과 피고 측으로 구분하여 피고가 제출하는 본 안전항변사유와 원고가 제출하는 본안쟁점사항을 변수로 이 용하였다. 우선, 본안전항변사유와 본안쟁점사항을 빈도순으 로 선별하고, 각 내용 및 법원의 승소판결의 요지를 간결하게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선별한 본안전항변사유와 본안쟁점사 항을 변수로 이용하여 소각하판결 또는 본안승소판결에 영향 을 미치는 각 사유나 쟁점의 실제 인용률을 분석하고, 인용건 수 및 인용률에 대한 순위표를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계단 식 예측방식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일부의 본 안전항변사유나 본안쟁점사항이 소각하판결 또는 본안승소판 결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본안전항변사유와 관련하여, 피고에 의해 소송에서 실제 제 출된 것으로 파악된 총 14가지의 본안전항변사유의 인용률은 과거법률관계 항변, 인가고유하자 아님 항변, 조합원지위 또 는 소유권 없음 항변, 제소시간 도과 항변, 법률상이익 없음 항변 등의 순서로 주장빈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용 건수 및 주장건수 대비 인용건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인용가능

<sup>47)</sup> 서울27466, 서울44478, 서울49664, 서울49879, 부산4716, 광주4944, 서울 27219, 의정3823, 부산5030, 부산5061, 서울43208, 서울6397, 서울40417, 서 웈1945

<sup>48)</sup> 부산482, 서울21853, 서울32099, 서울32105, 서울45863

<sup>49)</sup> 서울160, 서울56044, 서울25404, 서울33603

<sup>50)</sup> 서울47466, 서울34365, 서울12150

<sup>51)</sup> 서울34365, 서울47316, 서울9192

<sup>52)</sup> 서울48166. 서울41970. 서울863

<sup>53)</sup> 서울47316. 서울50315. 서울9192

성을 배열한 순위표에 의하면, 우측 방향일수록 인용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예측변수로 '과거법률관계'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을 이용하여 계단식 예측방식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결과, 가장 굵은 선은 승패소구분계단 또 는 승패소분계선이라 할 수 있고, 소범주는 우상방일수록 승 소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안쟁점사항과 관련하여, 원고에 의해 제출된 총 27가지 의 세부 본안쟁점사항을 범주화하여 재분류한 13가지 본안쟁 점사항의 인용률은 동의율하자산정, 동의서관련하자, 구역지 정전승인, 총회관련하자, 구역지정하자 등의 순서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안전항변사항의 인용건수와 주장 건수 대비 인용건수를 기준으로 인용가능성을 배열한 순위표 에 따르면, 순위표의 우측 방향일수록 인용가능성이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핵심예측변수로 '과거법률관계'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을 이용한 계단식 예측방식에 의한 행렬표 식 분석결과, 우상방일수록 소범주는 본안승소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굵은 선보다 우상방이면서 중간 굵은 선보다 좌하방의 빈 행렬칸은 승패소구분기준의 기 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소송 관련하여 당사 자들은 소송결과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불필요 한 법률분쟁을 줄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분쟁해 결의 빈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미국 등 서구에서는 소송사건의 종료 후 해당 사건의 판결을 분 석하여 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데이터화하 여 판결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는 사 실관계가 아니라 당사자가 판결 전 재판심리 과정 중 제출하는 주장내용을 데이터화하여 판결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후속연구로는 장기간 집적된 판결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변수를 보다 정교하게 구분함으로써 개별 변수의 고유한 영향력을 분석하여 판결결과에 대한 보다 정확 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하급심 판결이 대다수의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전문가들은 이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예측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Baade, Hans Wolfgang (1963), Jurimetrics, Basic Books. Havard Law School (2017), "Course Catalog 2017-2018" Havard University, Cambridge, MA, USA, <a href="http://hls.harvard">http://hls.harvard</a>. edu/academics/curriculum/catalog/index.html> (Aug. 31. 2019)
- Keown, R. (1980). "Mathematical Models for Legal Prediction." The John Marshall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 Privacy Law, pp. 829-862.
- Loevinger, Lee, (1962). "Jurimetrics; Science and Prediction in the Field of Law." Minnesota Law Review. Minnesota Law School, 46, pp. 255-260.
- Nagel, Stuart S. (1966). "Judicial Prediction and Analysis From Empirical Probability Tables." Indiana Law Journal, Indiana Law School, 41(3), pp. 403-419.
- Nagel, Stuart S. (1985). "Case Prediction by Staircase Tables and Percentaging." Jurimetrics, American Bar Association, 25(2), pp. 168-195.
- Saks, Michael J., Samantha L. Neufeld (2012), "Parallels in Law and Statistics: Decision Making under Uncertainty." Jurimetrics, 52(2), pp. 117-122.
- Steckman, Kris (2009). "Market-Based Prediction Models as an Aid to Litigation Strategy and Settlement Negotiations." The Journal of Business, Entrepreneurship & the Law, pp. 244-272.
- Yale Law School (2017). "Spring 2017 Course Information" Yale University, New Haven, CT. USA. (http://courses. law.yale.edu/courses/term/17> (Aug. 31, 2019)

요약: 본 연구는 부동산건설 관련된 대표적 소송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주체인 조합설립과 관련된 소송의 승소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조합설립인가 쟁송에 대한 전국의 제1심 행정법원 판결 441건을 분석대상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본안전쟁 점사항을 구분하여 계량법학적으로 승소확률표에 의한 빈도분석 및 계단식 예측방법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실행하였다. 인용률 을 활용한 분석결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관련하여 과거법률관계 항변. 인가고유하자아님 항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항 변, 제소시간 도과 항변, 법률상이익 없음 항변 등, 본안쟁점사항과 관련하여 동의율하자산정, 동의서관련하자, 구역지정전승인, 총회관련하자. 구역지정하자 등의 순서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계단식 예측방식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통해 핵심예 측변수인 '과거법률관계'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을 이용하여 본안승소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승패소구분을 위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참여자별 소송결과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분쟁해결의 빈도를 낮 취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키워드: 계량법학, 도시정비사업, 소송사건, 인용률, 행렬표식 분석